



<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⑮>

파업중 대체근로 금지, 어떤 문제가 있나?

【대체근로 금지의 문제점】

-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외부로부터 정규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 때문에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사용자 측은 부족한 근로자를 충원해서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상대적 권리인 사용자의 생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과 사용자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생산권은 상호적인 권리로서 둘 다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 그러므로 파업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대체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제도임.
- 대체근로 금지는 그 자체로 생산 중단을 야기하여 사회적 손실을 일으킬 뿐 아니라 파업기간을 더 길게 하여 생산 및 사회적 손실을 더욱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생산은 지속되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경제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파업시 영구적인 대체근로로 인해 파업 종료 후 직장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을 주도하거나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등으로 충분히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음. 따라서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는 당사자대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주요 선진국의 관련제도 현황】

○ 미국

미국 연방노사관계법(NLRA)의 내용상 파업은 “부당노동행위 파업”(unfair labor practice strike)과 “경제적 파업”(economic strike)으로 구분되는데 부당노동행위 파업은 사용자가 행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항의·대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말하고, 경제적 파업은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요구를 위하여 행하는 통상적인 파업이 여기에 해당함.

- 부당노동행위 파업의 경우 파업참가 파업 종료 후 복귀신청에 따라 무조건 원직복귀가 보장됨. 즉 사용자는 파업기간에 한정하는 임시적 대체근로의 사용만이 가능함. 그러나 경제적 파업의 경우 파업 참가자는 영구적 대체근로자가 고용된 경우 그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원직복귀가 보장되지 않음. 다시 말해 경제적 파업시에는 영구적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음.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파업시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대체금지 조항만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다른 금지 조항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파업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음. 파업시 무기근로계약자를 채용하거나 도급을 주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데, 무기근로계약자의 경우 파업 종료 후 파업참가 근로자가 복귀하면 해고가 가능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반면 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는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독일

독일에서 파업시 대체근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게는 파업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에게는 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당사자대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체근로를 활용해서 조업을 계속할 경우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느냐가 관건임. 즉 당사자 대등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파업시 외부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파업에 의해 중단된 업무를 제3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임.

○ 일본

일본에서도 일반적으로 파업시 사업장내 인력을 이용한 대체근로 및 외부로부터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다만

직업안정법에서 공공직업안정소가 노동쟁의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파업 중인 사업장에 구직자를 소개할 수 없도록 하되, 당해 쟁의가 발생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일하고 있던 근로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근로자를 소개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음.

【참고자료】

남성일,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 자유경제원 2015.06.18.

이상희,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개선 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09.1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